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13
--------	--------	-----

제출년월일 : 199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사유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체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 주요골자

-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게 토지매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발생시, 폐천부지를 대부받은자에게 매각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등에 적용하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2조 제8호)
-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인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던 사용 및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코자 함 (안 제23조 제6항)

## □ 개정근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시달(내무부공기 13330 - 83 '97.2. 5)

## □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